광명시의회 공고 제2017 - 2호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김정호 의원이 추진 중인「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의2제1항 및「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2. 3.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5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2월 9일(목) 10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5,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chaos96@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의사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5

- 입법예고 목록-

○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공무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년 1월 31일
발　의　자 : 이 윤 정 의원

1. 제안이유

○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수당)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지 10년이 지났으나 현재 조례에 따른 일비로는 재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위원을 위촉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며

○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일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일비 액수 인상(현재 100,000원 ☞ 150,000원) (안 별표 2)

○ 여비 지급 근거조항 개정(안 별표 2)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6. 기타 참고자료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 붙　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이윤정 의원 대표발의 (외 4명)
검토 및 소관	의회사무국
입　　안	의원 이윤정 (02-2680-2531)

[별표 2]

구　　분	액　　수
일　　비	150,000원
여　　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의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별표 2]

현 행

[별표 2]

구 분	액 수
일 비	100,000원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여비지급 구분표상 시의 경우는 부시장 상당액

개 정 안

[별표 2]

구 분	액 수
일 비	150,000원
여 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의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참고자료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년 2월 3일
발 의 자 : 김 기 춘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으로 “철도정책실“이 신설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음

○ 유라시아대륙철도사업,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 철도사업 추진, 새교통수단 도입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첨단도시교통과의 유라시아대륙철도팀이 “철도정책실”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철도정책실) 추가 (안 제3조제2항제2호가목)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6. 기타 참고자료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민안전국”을 “철도정책실, 시민안전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기춘 의원 대표발의 (외 4명)
검토 및 소관	의회사무국
입 　　안	의원 김기춘 (02-2680-2537)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자치행정위원회 가.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고용경제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하부행정기관에 속하는 사항 2. 복지건설위원회 가. <u>시민안전국</u>, 복지돌봄국, 시민행복국,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삭제 <2010. 11. 25> 3.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자치행정위원회 가.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고용경제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하부행정기관에 속하는 사항 2. 복지건설위원회 가. <u>철도정책실, 시민안전국</u>, 복지돌봄국, 시민행복국,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삭제 <2010. 11. 25> 3.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7년 2월 1일

발 의 자 : 김 정 호 의원

1. 제정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의 피해를 당한 시민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음

2. 주요내용

가.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함(안 제1조)

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제9조)

3. 조 례 안 : 붙 임

4. 입법예고 : 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6. 기타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발췌서(붙 임)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광명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과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광명시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례비 및 위로금
2. 상담 및 치료비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등 지원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시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해촉을 결정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외 4명)
소 관	자치행정과
입 안	의 원 김 정 호 (02-2680-658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관 계 법 령	내 용
범죄피해자 보 호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년 2월 1일
발 의 자 : 나 상 성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르면,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통장도 연임을 2회 이상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회 이상 연임도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아울러, 연임하는데 부적절한 통장은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통장의 임기는 종전과 같이 3년으로 하되,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회 이상 연임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5조의2제1항)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6. 기타 참고자료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나상성 의원 대표발의 (외 5명)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과
입 안	의원 나상성 (02-2680-2509)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최근에 연임한 통장을 1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촉된 통장이 임기만료전 퇴임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동장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다. ③ 통장의 임기 만료일은 다음과 같이 분기별 기준으로 만료된다. 1. 임기 만료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3월 31일 임기 만료 2. 임기 만료기간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6월 30일 임기 만료	제5조의2(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임하게 할 수 있다. ② 및 ③ (현행과 같음)

광명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공무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7년 2월 1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및 공무직의 권리를 보호(차별해소)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공무직전환)을 촉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기간제근로자, 단기간근로자, 공무직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공무직의 부당한 계약해지, 차별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광명시 공무직 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에서 17조까지)

라. 광명시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하여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18조)

마. 시장은 매년 12월 31일 등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계약만료일을 채용시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9조)

바. 시장은 근로자 채용 시 소속기관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1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자료

○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 붙 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공무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광명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공무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본청과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4.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명시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국, 광명시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한다)로 전환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시의회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시)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담 또는 사업주체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해소라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5조(부당한 계약해지 등) ① 시장은「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예외 사유가 없는데도 같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시장은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처우 금지) ① 시장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및 공무직에 대하여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및 공무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우선 고용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광명시 공무직 전환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공무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의 공무직 전환에 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의 업무가 상시 고용 가능한 업무인지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및 공무직에 대한 채용 및 인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무직 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시의회 의원
  2. 인사, 노무관리,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공무직 전환 대상자 선정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 및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안건의 배부 및 자료제출)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담당업무, 전환사유 및 전환제외 사유 등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심의결과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시장 및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촉 위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 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예산 등) 시장은 비정규직 해소를 위하여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의 공무직으로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만료일 등) 시장은 매년 12월 31일 등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계약만료일을 채용시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예외규정) 초단시간 근로, 고령자, 대체근로 등 법에서 정한 공무직 전환 예외 인정 부문은 본 조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채용규정) 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공무직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직종에 있어서 합리적 채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광명시 공무직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 채용 시 소속기관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권고) ① 시장은 광명시 산하기관에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명시와 관련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이 조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2명)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과
입 안	김익찬 의원 (02-2680-2538)

참고자료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2-12-28 조례 제 4484호
(일부개정) 2013-12-02 조례 제 4651호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01-14 조례 제 4849호
(전부개정) 2016-09-29 조례 제 533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나.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다.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차별적 처우"란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담 또는 사업주체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해소라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한다.

제5조(부당한 계약해지 등) ① 도지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예외사유가 없는데도 같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처우 금지)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직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우선 고용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직원 중 제2호제1호가목 및 나목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공무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 고용 가능한 업무인지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공무직원 채용 및 인사와 관련하여 도지사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무직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노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도의회 의원 1명
2. 인사, 노무관리,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3.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 1명
4.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2명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무직원 차별해소 등에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대상자 선정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안건의 배부 및 자료제출)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담당업무, 전환사유 및 전환제외 사유 등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심의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도지사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위촉위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위원회는 심의 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예산 등)도지사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하여 공무직원 중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만료일 등)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 등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계약만료일을 채용시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예외규정)초단시간 근로, 고령자, 대체근로 등 법에서 정한 무기계약 전환 예외 인정 부문은 본 조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조(채용규정)① 공무직원 중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계약기간 만료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직종에 있어서 합리적 채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근로자 채용 시 소속기관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원 중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권고)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공무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와 관련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이 조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준용)공무직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